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범죄에 대한 형사공탁 배제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4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형사공탁 특례의 기간 제한 등	3
2. 특정범죄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탁 배제	11
3. 관계기관 의견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
3.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2. 주요내용

- 가.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 나.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 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III. 검토의견

1. 형사공탁 특례의 기간 제한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함)을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의2제1항),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되,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피공탁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형사공탁 절차에서 법원이 피공탁자 또는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임(안 제5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 ----- ----- ----- <u>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해당</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④ · ⑤ (생략)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나. 현행 「공탁법」상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

원칙적으로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상의 제도인 바¹⁾,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을 일컫는 용어임.

1)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그런데 민사상 변제공탁이 원칙인 상황에서 「공탁법」 제4조²⁾ 및 동법 시행규칙³⁾에 따르면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형사소송법」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⁶⁾ 등에 의해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중용하고 협박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

2)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4)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2020년 12월 8일 「공탁법」 개정을 통해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었는바, 형사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 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이 강화되었음.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 검토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의미하는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피해의 본질이 금전인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의 경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인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 있어서도 공탁이 양형의 감경 요소로 규정되어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판결 988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 10곳 가운데 8곳에서, 전체 988건 판결 중 785건(79.5%)에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감경 사유로 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인지한뒤 재판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선고 2주 이내에 이루어진 이른바 ‘기습공탁’이 전체 988건 중 558건(56.4%)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⁷⁾.

이에 개정안은 선고기일에 임박한 공탁 이른바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판부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되,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피공탁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

7) KBS, “판결 988건 최초 분석...절반 이상 ‘기습공탁’”, 2023년 11월 20일자 기사 참조.

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공탁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가해자의 형량에 피해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피공탁자 또는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 측면에서 「공탁법」⁸⁾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⁹⁾.

또한, 현행 「공탁법」에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시기의 제한이 없는 반면,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시기를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8) 공탁 절차와 공탁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법률의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 방법, 공탁물의 수령 및 회수, 공탁금관리위원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9) 참고로, 정부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의안번호 제2202274호)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는바,

변론종결기일은 사전에 특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형사공탁의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한하는 경우 어떠한 시기를 제한기간으로 설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현행 「공탁법」상 ‘형사공탁’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어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공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의 취지가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임을 고려할 때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공탁에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의 절차가 담보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공탁관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기재가 생략된 가명사건의

경우 조서 등도 가명으로 작성되고 신원관리카드를 검사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신원을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고¹⁰⁾, 검찰에 열람요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송부받는 경우 재판의 절차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공탁 사실에 대한 통지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⑧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① 법원은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2. 특정범죄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탁 배제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중상해, 특수상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조의3(형사공탁의 예외)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다.</u> <u>1.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및 제262조의 죄. 다만, 제262조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u> <u>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u> <u>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u> <u>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u>

현행	개정안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중상해, 특수상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형사공탁의 예외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사공탁이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공탁을 배제하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형사공탁의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중상해, 특수상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형사공탁이 형사사건 판결 선고에 있어 양형의 감경 인자로 작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공탁 제도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간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형사공탁제도가 범죄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특정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형사공탁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장시간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제5조의3에 따른 형사공탁 적용 배제 범죄 >

제1호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2조(폭행치사상, 단,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
제2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제2조의 특정 강력범죄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예비, 음모),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u>다만,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u>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제5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죄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6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형사공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공탁의 시기는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요건이 아닌바, 형사공탁의 시기를 제한하는 경우 변제공탁 중 형사공탁에 대해서만 별개의 공탁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민법」과의 체계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필요적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재판규범에 관한 사항이므로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범죄에 대한 형사공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사공탁 특례의 도입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는 공감하나, 형사공탁의 시기를 변론종결 7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경우 공탁 시에는 변론종결 7일 전인지 여부가 확정될 수 없어 공탁의 유효성이 사후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형사공탁 사실에 대한 고지를 법원으로 하는 경우가명사건 등에 있어 피해자 신원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공탁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경우 재판 지연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